

##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

(가칭)창사초 설립 예정 부지의 사용허가 계약 종료 후 변상금(연체료 포함)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0조, 제81조,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, 연락두절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: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 송달 공고
2. 근거법령
  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0조, 제81조, 제83조
  - 나. 「행정대집행법」 제6조
  - 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, 제15조
  - 라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0조, 제81조
3. 공고기간: 2025. 4. 17.(목) ~ 2025. 5. 2.(금) (16일간)
4.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
  - 가. 공시송달 대상자

대상자		사용허가재산			사용기간
성명	주소	재산명	구분	면적	
변*원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 ***-***호 (장항동, **시티1차)	(가칭)창사초	토지	11,801.5㎡	2014. 10. 1. ~ 2019. 9. 30.

나. 부과금액: 금276,489,850원(금이억칠천육백사십팔만구천팔백오십원)

(단위: 원)

변상금	연체료	행정대집행비용	합계
151,540,180	107,875,610	17,074,060	276,489,850

5. 송달내용

가.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, 위 공고기간 도래시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7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6조에 따라 체납처분(강제징수)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6. 문의처: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재산팀 담당자(☎ 043-299-3058)

2025. 4. 16.

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